

제1장 총 칙	3
제1조(상호)	3
제2조(목적)	3
제3조(본점의 소재지 등)	3
제4조(회사의 정립시기 및 존속기간)	3
제5조(용어의 정의)	4
제2장 사 원	8
제6조(사원의 수)	8
제7조(사원의 출자)	8
제8조(사원의 권리와 의무)	8
제9조(사원의 해임)	8
제3장 출 자	9
제10조(출자의무)	9
제11조(출자의무의 이행)	10
제12조(출자금의 환급)	11
제13조(출자의무의 불이행)	12
제14조(신입사원의 가입)	15
제15조(출자증서의 교부)	15
제4장 사 원 총 회	16
제16조(사원총회의 소집)	16
제17조(사원총회의 결의)	17
제18조(사원의 의결권)	19
제19조(의사록)	20
제5장 업무의 집행	20
제20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20
제21조(회사재산의 운용 방법)	22
제22조(미투자재산의 운용)	24
제23조(보고)	24
제24조(자문위원회)	25
제25조(핵심운용인력의 책임 및 변경과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27
제26조(이해상충 있는 거래의 금지)	29
제27조(손해배 보권)	30
제6장 비용 및 보수	31
제28조(회사운영비용)	31
제29조(관리보수)	32
제30조(성과보수)	35
제7장 회사재산의 분배	36
제31조(분배 시기)	36
제32조(분배 대상)	36
제33조(회사재산의 분배)	37
제34조(분배의 방법 및 절차)	37
제8장 사원의 지위 변경	38
제35조(출자지분의 양도 요건)	38
제36조(출자지분의 양도 절차)	38

정 관

2011. 7. 20

문예포서 미래에셋그로스캡프 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7조(출자지분 양도의 효과)	39
제38조(사원의 퇴사)	40
제39조(사원의 재명)	40
제40조(회사 사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	41
제41조(업무집행사원의 해임)	42
제42조(사원의 지위 변동)	42
제9장 해산 및 청산	43
제43조(해산)	43
제44조(정산인)	44
제45조(정산인의 직무와 권한)	44
제46조(정산의 절차)	44
제10장 회계	45
제47조(사업년도)	45
제48조(회계원칙)	45
제49조(투자자산의 평가)	45
제50조(장부의 열람권 등)	46
제51조(회계보고 등)	46
제11장 보칙	47
제52조(공통투자)	47
제53조(총지)	48
제54조(정관의 변경)	50
제55조(비밀유지)	50
제56조(정관의 작성(연월일))	51
제57조(정관의 일부 실효)	51
제58조(정관의 해석 및 보충)	51
제59조(기타)	51
사원 서명란	52
<별지 1> 사원별 출자 내역	54
<별지 2> 주무관투자분야	55
<별지 3> 핵심인용인력의 인적 사항	56
<별지 4> 핵심인용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57

정 관

개정: 2010년 11월 26일  
 개정: 2011년 07월 05일  
 개정: 2011년 07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회사의 상호는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스 캠프 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영문으로는 'KOFCC Mirraasset Growth Champ 2010-4 Private Equity Fund'로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등)**
- ①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회사의 정립시기 및 존속기간)**
- ① 회사는 설립동기일(이하 "회사설립일"이라 한다)로부터 정립한다.
  - ② 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8주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1년씩 총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용어의 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개별납입이행비용”이라 함은 어느 지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출자약정금 총액에 대한 해당 지정납입일에 사원들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각 지정납입일 시점의 개별납입이행비용의 환제는 누적납입이행비용과 동일하다.
2. “공사”라 함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
3. “공사출자약정금비용”이라 함은 업무집행사원이 공사에 제출한 회사 설립 제안서에 따라 공사가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출자하기로 한 비율로 42.2%를 말한다.
4. “공정가액”이라 함은 어느 재산에 관하여 제49조의 방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산정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가치를 말한다.
5. “관련 법령”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상법 기타 회사 또는 각 사원에 대해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말한다.
6. “국내기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외국기업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을 포함함)과 해당 기업의 해외현지법인(합작법인을 포함함)을 말한다.
7. “기준수익율”이라 함은 연복리 8%를 말한다.
8.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사원이 그 출자약정금 중 출자 의무의 이행으로써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9. “납입출자금비용”이라 함은 납입출자금총액에 대한 어느 사원의 납입출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10. “납입출자금총액”이라 함은 사원 전원의 납입출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납부수익율”이라 함은 어느 사원에 대하여 (i) 그 사원의 회사에 대한

모든 납입출자금(음수로 표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급된 출자금 제외)과 (ii)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모든 배분금액(양수로 표현)을 각 납입일로부터 각 배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2. “누적납입이행비용”이라 함은 어느 시점의 출자약정금총액(신입사원이 입사하는 경우 신입사원의 출자약정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납입출자금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13. “미투자자산”이라 함은 회사재산 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운용 결과 회수된 재산 중 아직 사원에 대해 분배되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4. “수탁회사”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에 경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회사재산을 보호·예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본 정관 목적상 수탁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추천하는 기관 중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업무집행사원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5.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이 추천하는 기관 중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업무집행사원이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16. “조정출자금”이라 함은 신입사원의 출자약정금에 신입사원의 가입 이전의 누적납입이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7. “주목적투자분위”라 함은 회사가 제21조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분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18. “주요채권자”라 함은 어떤 사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i) 금융감독원의 주체구별 선정에 따라 선정된 계열 또는 업체의 주채권은행이거나 (ii) 최근 회계연도말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총 금융채무에 대하여 최대금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또는 총 금융채무의 30% 이상 금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금융채무라 함은 회사채를 포함한 채무증권 및 금융기관 대출금

- 등 이차지급성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사채 등으로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기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 “지연가입금”이라 함은 신입사원의 출자약정금에 해당 신입사원의 가입 이전 각 지정납입일의 개별납입이행비용을 골한 금액(최초납입일 이후 투자자가 분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분배금을 제외하여 계산한다)에 관하여 해당 지정납입일로부터 신입사원이 이를 실제로 납입한 날까지 연8%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 “지정납입일”이라 함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원이 부담하는 출자금 납입의무와 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이 각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서 지정된 날을 말한다.
  21.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되 그에 한장되지 않는다.
  22. “최초납입비용”이라 함은 최초납입일 현재 출자약정금총액과 사원 전원의 납입출자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23. “최초납입일”이라 함은 사원들이 그 출자금을 최초로 납입한 날로서 제11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최초 출자이행통지에 기재된 지정납입일을 말한다.
  24. “최초투자납입요청일”이라 함은 최초납입일 이후 업무집행사원이 제21조에 따른 회사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사원들에 대하여 출자이행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
  25. “출자지분”이라 함은 사원이 납입출자금의 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갖는 지분을 말한다. 다만, 최초납입일 이전에는 사원이 출자약정금비용에 따라 회사재산에 대하여 갖는 지분을 말한다.
  26.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각 사원이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불능조건부로 출자이행을 약속한 금액을 말한다.
  27. “출자약정금비용”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총액에 대한 어느 사원의 출자약정금의 비율을 말한다.
  2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어느 사원의 출자약정금에서 해당 사원의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9. “출자약정금총액”이라 함은 사원 전원의 출자약정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0. “출자지분율”이라 함은 사원 전원의 출자지분의 총수에 대한 어느 사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31. “투자목적회사”라 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32. “투자기간”이라 함은 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이행요청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3. “투자대상기업”이라 함은 회사가 자본시장법과 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34. “투자심의위원회”라 함은 제25조에 따라 업무집행사원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35. “투자원금”이라 함은 특정 투자 건에 대하여 각 사원이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을 말한다.
36. “투자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본 정관에서 정한 회사재산 운용의 결과 인수, 투자 또는 매입하여 취득한 자산(단, 제22조에 따른 미투자자산의 운용에 의한 것을 제외함)을 말한다.
37. “투자잔액”이라 함은 투자자산 중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잔여 자산에 부여된 투자원금을 말한다.
38.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9. “해외원거법인”이라 함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원거법인을 말한다.
40. “회사”라 함은 본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코에프씨 마태에셋그로스캐프프 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의미한다.
41. “회사운영비용”이라 함은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42. “회사재산”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회사에 출자한 납입출자금 및 그 운용행위로써 취득한 투자자산, 현금, 권리 및 회수자산 기타 회사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의 잔액을 말한다.
43. “회수자산”이라 함은 투자자산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

44. "Buyout 투자"라 함은 투자대상기업이 기존에 발행한 주주의 51% 이상을 취득하고 이사회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 제2장 사 원

### 제6조(사원의 수)

- ① 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인 이하로 한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의 계산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사원의 출자)

- ① 사원의 출자는 현금에 한한다.
- ② 출자지분 1좌의 가액은 1원 (₩ 1)으로 한다.
- ③ 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사업장등 목록번호, 주소,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비율은 별지 1과 같다.
- ④ 사원의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비율은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⑤ 본 조 제4항에 따른 어느 사원의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비율의 증액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입사원 가입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종전 출자약정금 비율 또는 출자지분율의 유지를 희망하는 사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출자약정금의 증액을 우선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사원의 권리와 의무)

사원은 본 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원의 출자지분의 액수에 비례하여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사원의 책임)

- 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회사채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전액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회사가 회사채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출자약정금잔액의 한도 내에서 나머지 사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약정금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약정금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본 조에서 "초과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은 초과분에 대해서 유한책임사원을 면책하여야 한다. 만약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을 면책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초과분을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초과분 및 이에 관하여 회사의 채권자에게 초과분을 지급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장 출 자

### 제10조(출자의무)

① 사원들은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하 "투자기간")까지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이행요청에 따라 출자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약정금 전액의 납입 여부에 관계 없이 사원들의 출자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약정금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이행요청에 따라 해당 사원의 출자약정금잔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투자기간 중에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또는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운영비용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사가 기투자한 자산에 대한 추가투자를 위한 경우(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기피하게 인정되는 추가투자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업무집행사원들이 추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사원전원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제11조(출자의무의 이행)

- ①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각 사원들에게 그 출자약정금비용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본 항에 따른 출자요청을 함에 있어 기존에 출자약정금비용과 납입출자금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원이 존재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 출자약정금비용과 납입출자금비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원이 납입하여야 할 출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정납입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이하 “출자이행통지”)으로 출자이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원들이 전원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필요 자금의 규모 및 용도
  2. 각 사원별 출자금
  3. 지정납입일
  4. 출자금을 납입할 계좌번호

- ③ 각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의 출자이행요청에 따라 지정납입일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출자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자신의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④ 업무집행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납입일 이전에 새로운 서면 통지에 의하여 출자이행통지를 철회하거나 각 사원별 출자금액을 감축할 수 있다.

#### 제12조(출자금의 환급)

- ①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들은 납입된 출자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업무집행사원은 사원들이 제11조에 따라 출자금의 납입을 한 경우 그 납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이하 “투자실행기간”)에 출자이행통지에 기재된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실행기간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연장 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실행기간 내에 투자를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투자실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영업일까지 당해 출자이행을 한 사원들에게 각자의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출자이행통지에 기재된 투자에 필요 자금의 전부나 소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소모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투자실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영업일까지 당해 출자이행을 한 사원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원별 환급액은 그 출자이행비용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출자이행통지에 회사운영비용 및 관리보수로 용도가 특정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 ④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된 출자금은 해당 사원의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며, 해당 사원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다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환급후 최초로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때, 환급된 출자금은 관하여, 해당 사원이 해당 출자금을 출자한 날로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상법상 법정이자율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4항 제2문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투자를 위한 거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 체결 전에 예치하여야 하는 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납입한 출자금이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성사되지 아니함으로써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본 조 제4항 제2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본 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상법상 법정이자율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지급일이 속한 기간에 대한 업무집행사원의 관리보수에서 본 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삭감한다.

⑦ 업무집행사원이 본 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이행하는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15%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업무집행사원 자신의 재산으로 당해 출자이행을 한 사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자의무의 불이행)

① 어느 사원(이하 “출자불이행사원”)이 지정납입일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불이행사원은 지정납입일의 익일부터 회사의 재산의 분배 및 이익 배분을 받을 자격,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의 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그 밖의 사원들에 의한 동의 및 승인 절차에 참여할 자격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할 자격(출자불이행사원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업무집행사원은 출자불이행사원이 지정납입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이하 “추후납입기간”)에 미납된 출자금(이하 “미납출자금”)을 납입(이하 “추후납입”)할 것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유한책임사원 전원에게 출자불이행사원 및 출자불이행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자불이행사원은 본 항에 따라 추후납입을 하는 경우 미납출자금을 관하여 지정납입일로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연체이자(연체이자의 지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된 연체이자는 출자불이행사원의 납입출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출자불이행사원은 추후납입일 다음날부터 본 항 제1문에 따라 상실하였던 자격을 회복한다.

② 출자불이행사원이 지정납입일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미납출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다른 사원들에게 출자약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원들의 추가 출자금은 해당 출자불이행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원의 출자약정금액에 따라 분배하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 절차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출자불이행사원이 미납출자금 및 그에 관한 연체이자를 모두 납입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그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

내에 본 항에 따라 추가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원들에게 각 추가 납입 출자금(그에 관하여 추가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함)을 환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환급된 추가 납입 출자금은 해당 사원의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며, 해당 사원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다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③ 출자불이행사원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후납입기간까지 추후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추후납입불이행”)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출자불이행사원은 추후납입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자할 자격을 상실한다.

2. 출자불이행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이하 본 조에서 “나머지 사원”이라 함)은 추후납입기한이 만료한 다음날(이하 “지분양도가능시점”이라 한다)부터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이하 “인수대상출자지분”)을 나머지 사원들 각각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양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지분양도 가능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나머지 사원들에게 인수대상출자지분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통지(이하 “인수통지”)하여야 하고, 본 호에 따라 인수대상출자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원(이하 “양수희망사원”)은 인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하 “인수기한”) 이내에 업무집행사원에게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느 사원이 본 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 중 일부분을 행사하거나 전부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행사되지 않고 남은 출자지분을 본 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전부 행사하고자 하는 사원들에게 각각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양수하게 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출자지분의 양수도는 양수희망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게 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출자불이행사원과 양수희망사원 사이에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지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그 양도계약은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에 관한 납입출자금 또는 지분양도가능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회사재산의 공정가액에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에서 50% 환인된 가

액으로 한다.

④ 본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 전부가 나머지 직원들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업무집행사원은 나머지 직원들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한 인수대상출자지분의 양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제3자를 선정하여 양수회합사원의 양수조건보다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인수대상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본 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지분매각 절차 및 효력에 대하여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수대상출자지분 등 본 조 제3항 및 본 항에 따라 양수회합사원들 및 제3자에게 인수된 출자지분을 “인수출자지분”이라 하고, 그 나머지를 “잔여출자지분”이라 한다.

2. 본 항 제1호에 의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자불이행사원의 잔여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더 이상 제1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원들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출자불이행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통지를 한 날의 다음날(이하 “퇴사시점”이라 한다)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 출자불이행사원이 본 호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지분환급청구권 금액은 (i) 출자불이행사원의 잔여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납입출자금과 (ii) 퇴사시점의 회사재산의 공정가액에 출자불이행사원의 잔여출자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시점은 회사 청산 시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지분환급금의 구체적인 반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수대상출자지분을 인수한 사원과 제3자는 자신이 인수한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출자불이행사원의 시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포괄승계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수대상출자지분을 인수한 사원은 그 자신의 출자지분과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에 추가하여, 출자불이행사원의 출자지분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미납출자금의 납입의무를 포함함)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되, 그 추가되는 출자지분과 변제 책임은 출

자불이행사원의 출자약정금잔액에 자신이 인수한 인수대상출자지분을 인수대상출자지분으로 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불이행사원은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인수대상출자지분 양수도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14조(신입사원의 가입)

① 회사는 회사설립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이하 본 조에서 “사원가입결의”)로써 새로운 출자자(이하 “신입사원”)를 회사의 사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입사원의 출자약정금 기타 신입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은 사원가입결의로 정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신입사원의 가입에 따라 별지 1에 기재된 사원별 출자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은 그와 같이 변경된 본 정관에 기명하여야 한다.

④ 신입사원은 출자이행동적에 기재된 지정납입일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날에 조정출자금 및 지연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되, 지연가입금은 신입사원의 납입출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납입출자금비율이 출자약정금비율(신입사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과 동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납입받은 조정출자금 및 지연가입금을 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각 사원(신입사원을 제외한다)에게 그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각 사원이 본 항에 따라 조정출자금 및 지연가입금 중 출자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조정출자금 중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해당 사원의 출자약정금 및 출자약정금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며, 해당 사원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다시 출자지분을 부담한다.

#### 제15조(출자증서의 교부)

① 업무집행사원은 출자지분을 이행한 사원에 대하여 출자금의 납입일로부터



10명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기명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2.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3. 회사의 출자약정금액
  4. 회사의 납입출자금총액 및 이에 따른 출자지분의 총 취수
  5. 사원의 출자약정금
  6. 사원의 납입출자금 및 출자지분의 취수
  7. 출자증서에 의한 사원의 지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담보 제공 기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
  8. 출자증서의 발행일자
- ② 사원이 출자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출자증서를 다시 발행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원의 부담으로 한다. 출자증서가 다시 발행 교부된 경우 최종 발행된 것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출자증서는 출자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서의 의미를 가질 뿐, 사원의 지위 또는 출자지분을 표창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사원총회

##### 제16조(사원총회의 소집)

- ①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사원총회의 소집권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다수의 유한책임사원을 합하여 출자지분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업무집행사원에게 사원총회 개최일과 소집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업무집행

사원이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명업일 이내에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유한책임사원이 소집권자로써 직접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전 사원에게 사원총회 개최일로부터 10명업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소집통지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기타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의장은 업무집행사원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로 하되, 업무집행사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많은 업무집행사원이 지정하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원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대표자를 사원총회 의장으로 한다.

##### 제17조(사원총회의 결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원들의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이하 “일반결의”라 한다). 다만, 사원 1인의 의결권 수가 사원들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원 및 다른 사원 1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3호의 사항은 당해 퇴사 사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하며, 제4호의 사항은 업무집행사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1. 회사재산 분배의 승인
2. 제28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따른 회사운영비용의 승인
3. 퇴사 사원에 대한 출자금의 청산 전 환급 및 환급액의 확정
4. 제29조 제8항 본문 말호에 따라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관 리보수의 삭감
5. 청산 시 잔여 재산의 분배 승인
6. 회계감사인 및 평가기관의 선정 및 변경

7. 제49조에 따른 투자자산의 평가
  8. 공정가액의 승인
  9. 출자와정금비율과 납입출자금비를 일치를 위한 납입요청금액의 조정
  10. 수탁회사의 선정 및 변경
  11. 기타 본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원들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이하 "특별결의"라 한다). 다만, 사원 1인의 의결권 수가 사원들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원 및 다른 사원 1인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제3호(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한한다) 내지 제6호, 제10호의 사항은 업무집행사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사원출, 제3호(제21조 제2항 제2호에 한한다),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당해 사원을 각각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1.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투자실행기간의 연장
  2. 제14조에 따른 신입사원의 가입 승인
  3. 제21조 제2항에 따른 후행투자의 사전 승인
  4.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핵심응용인력의 겸임 승인, 제26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경임 승인
  5. 제24조 제7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의 중지 및 회복
  6. 제25조 제6항에 따른 투자기간의 조기 종료, 제25조 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의 삭감
  7. 제29조 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의 삭감(다만, 제29조 제8항 본문 괄호에 따라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본 호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일반결의에 의한다)
  8. 정관의 변경. 다만, 본 조 제3항에 따라 사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9. 사원의 제명 선고 청구
  10. 제2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의 승인
  11. 제31조에 따른 회사재산의 수시분배의 결의

12.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금 이익의 방법으로 분배
  13. 핵심응용인력의 변경
  14. 회사의 차입거래 및 담보제공 등 기타 차입 관련 거래의 승인
  15. 청산인의 선임
  16. 회사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17.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18. 기타 본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정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원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제2호, 제4호의 사항은 당해 사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하며,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당해 사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사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1. 존속기간의 연장
  2. 무한책임사원의 출자거분의 양도
  3. 회사의 해산
  4. 사원의 출자와정금의 증가 또는 감소
  5. 제2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승인
  6.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해임
  7. 제4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조직 변경
  8. 기타 본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전원동의에 의하도록 정한 사항
- ④ 본 조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고, 본 정관상 사원 전원의 동의(서면 동의 포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사원총회에서의 사원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사원의 의결권)**
- ①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출자지분 1좌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의 불동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사원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소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원총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원은 **사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면은 **사원총회의 개최 전에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소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원총회의 소집권자에 의하여 수명되어야 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 의결권은 사원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9조(의사록)**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모든 사원에게 **의사록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장 업무의 집행**

**제20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사원은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1. 회사재산의 관리·운용
2.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
3. 투자자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회사재산의 분배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회사의 회계처리
7.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회사 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법률 및 본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그 경우에도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집행사원에게 귀속된다.

1. 회사재산의 관리·운용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 업무
3. 투자자산에 관한 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 업무
4. 회사재산의 분배 업무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③ **업무집행사원은 본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 결과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사원이 제24조 제7항 및 제25조 제5항 기타 본 장과의 규정에 따라 그 자산운용업무가 일시 중지되더라도, 그 기간 중에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자본시장법 및 본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사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은 전자적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회사재산의 운용 현황이 사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은 정보 가공 및 정보 전송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요청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전자적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수정되어야 한다.**

⑦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 요청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회사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전자문서(「전자기대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사재산의 운용 방법)

①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재산을 자본시장법 제27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하 “투자의무비율”)을 준수할 것  
가. 회사가 최초투자를 실시한 날로부터 투자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남일출자금총액의 [60%와 공사의 출자약정금비율 중 높은 비율] 이상을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의 종료 시점에는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한 비율이 출자약정금총액의 [60%와 공사의 출자약정금비율 중 높은 비율]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투자기간 종료 시점까지 어떤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하 본 목에서 “회사 투자자산”)이 회수된 경우에도 본 목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회사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투자원금은 회사 투자자산 회수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것으로 보고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나. Buyout 투자는 투자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출자약정금총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할 것
2. 투자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투자 금액(투자원금 기준)의 100%를 국내기업에 투자할 것. 다만, 국내기업이 주목적투자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해당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투자하지 아니할 것
4.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투자하지 아니할 것
- ②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선행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이하 “후행투자”)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증권시장(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그 발행주식총수의 5% 미만인 기업은 선행투자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집행사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고유 계정 또는 타 회사 계정을 통하여 투자한 기업. 다만, 업무집행사원과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회사와 공동으로 당해 후행투자금액 중 3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지분 5%이상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는 제26조에 따른다.
2. 공사 및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유한책임사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
3. 업무집행사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주요채권자이거나 회사의 투자와 관련한 중간사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기업. 다만, 업무집행사원과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투자자가 회사와 공동으로 당해 후행투자금액 중 3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이 회사의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투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투자 등을 한 후 회수한 회수금액은 다시 투자할 수 없으며, 회수금액은 사원에 대한 분배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⑤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 따라 투자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전력을 확충할 수 있고 관련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하 “성장전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투자자산 매각 시에도 그 방법이 성장전략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산의 매각절차 및 방법 등이 성장전략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미투자자산의 운용)

①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모든 재좌를 수탁회사의 금융상품으로서 수시입출금 재좌로만 개설하여야 하되 미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회사가 투자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차입금 관련 재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미투자자산을 주식,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중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평가㈜, 한국기업평가㈜ 중 1개사를 의미함)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신용등급이 AAA이상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 중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금융기관

제23조(보고)

① 업무집행사원은 각 사원에게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감사한지 않은 재무제표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자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재산 운용에 관한 수시보고를 해야 하고, 국내의 기관의 자산운용 및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정보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매 반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현황 및 운용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원에게 사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관해서는 사전에 자문위원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나 핵심운용인력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체재조치, 감독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체소, 형사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진 때

2. 업무집행사원의 파산·회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3. 건별 투자예정 금액이 출자약정금총액의 20%이상인 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 기타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있을 때(다만, 상장회사 발행 주식의 시장매각의 경우는 월별 사후보고로 한다)

5. 업무집행사원(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의 주요 주주 또는 경영진의 변동, 기타 업무집행사원의 재무 현황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회사재산의 가치 또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4조(자문위원회)

① 유한책임사원들은 업무집행사원의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유한책임사원이 1명씩 지명한 위원(이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출자자분이 가장 많은 유한책임사원(최초 납입일 전으로서 사원들의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경우에는 그 출자약정금이 최대인 유한책임사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으로 하고, 각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자신을 지명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1좌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는 소집 절차, 의결권의 행사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 정관상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업무집행사원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권한이 있고, 업

무집행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실행함에 있어 자문위원회와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1. 핵심운용인력의 책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별 투자예정 금액이 출자약정금총액의 20% 이상인 거래
  3.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조건 등과 회사 설립취지와의 부합 여부
  4. 제26조를 비롯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거래
  5. 기타 본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④ 자문위원회는 회사,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및/또는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의 재산의 관리, 운용 및 기타 회사의 관리 및 운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의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은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통상의 업무시간 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의 평가보고서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대상기업에 최초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이하 본 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운영비용으로 한다.
1. 회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에게 관련 법령 또는 본 정관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사원총회 결의로 실태조사가 결정된 경우
  3. 제43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자문위원회는 본 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설명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검증작업을 할 수 있다.

⑦ 업무집행사원에 의한 관련 법령 또는 본 정관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자문위원회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업무집행사원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업무를 중지시키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관리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투자 여부의 결정 등 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업무집행사원에 의한 법령 또는 본 정관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치유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업무집행사원의 중지된 업무수행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본 정관에 따른 권한의 행사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 및 다른 사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견내용은 업무집행사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업무집행사원은 자문위원회의 의견내용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와는 독립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25조(핵심운용인력의 책임 및 변경과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재산을 관리 및 운용할 인력(이하 “핵심운용인력”)으로 3인 이상을 두며, 그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별지 3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핵심운용인력은 투자기간 종료 전 투자자산(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운영비용의 지급 및 기 투자대상에 대한 후속투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포함)이 출자약정금총액의 60% 이상이 되기 이전에는 다른 회사(회사 설립 이전에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의 펀드매니저(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및 기타 단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핵심운용인력이 사망·질병·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핵심운용인력의 교체를 업무집행사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존속기간 중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후부터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손실금액이 납입출자금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핵심운용인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이상의 제재조치 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기타 회사재산 운용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핵심운용인력의 과반수 이상에게 본 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항의 경우는 그러한 변경 사유의 발생 시점, 제4항의 경우는 교체 요청의 의사가 업무집행사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업무집행사원의 회사재산의 운용 업무는 새로운 핵심운용인력이 선임되는 시점까지 기존 자산의 유지, 회계처리 등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중지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동일 기간 동안 핵심운용인력의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관여행위가 중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은 핵심운용인력이 회사의 존속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업무집행사원으로부터 탈퇴(퇴직 등 그 명목 불문)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존속기간 중 회사 원시정관 별지 3에 기재된 핵심운용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이탈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투자기간의 조기 종료, 권리보수의 삭감 등의 의안을 결의하는 자문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업무집행사원은 동 자문총회의 결의 내용에 응하여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회사 원시정관'이라 함은 회사설립일 당시의 정관으로서 제54조 및 제1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후 회사 원시정관이 변경되거나 본 항 제2문의 목적상 별지 3에 기재된 핵심운용인력은 회사 원시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⑦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회사의 투자에 대한 최종투자사결정(단, 미투자자산의 운용은 제외함)  
 2. 회사운영에 있어 건당 1억원 이상의 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단, 제1호의 투자 및 이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투자 건 별로 심의된 사항은 제외)

3. 핵심운용인력이 부하는 안전

4. 기타 자문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집행

⑨ 투자심의위원회는 핵심운용인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⑩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위원 11인중 4/5이상 출석, 출석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 있는 거래의 금지)

① 사원은 자문총회 전원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자문총회 특별결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회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도록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자문총회 전원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i) 업무집행사원이 운영하  
 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집합투자기구, 또는 (ii) 업무집행사원이 지  
 분 5%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자문총회 특별결의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i)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  
 계인이 운영하  
 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집합투자기구, 또는 (ii) 업무  
 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 또는 (iii) 업무집  
 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자문을 하는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⑤ 사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제3자를  
 동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⑥ 업무집행사원(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2.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내역을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4. 회사재산을 운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5. 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회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6. 회사나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 기타 회사재산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원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행위

⑦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없이는 투자자산이 출자약정금총액의 60% 이상(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 운영비용의 지급 및 기 투자대상에 대한 후속투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포함)이 되기 전까지 회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회사와 결합할 소지가 있는 어떠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 설립일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회사 설립일 이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구속력 있는 약정에 기초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설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투자기간 동안 회사의 투자 범위에 포함되며 회사가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투자기구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모두 회사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50억원 이하의 소규모투자는 예외로 한다.

#### 제27조(손해액 보전)

① 업무집행사원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 또는 다른 사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손해액을 손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또는 다른 사원에 보전하고 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업무

무집행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회사의 "손해액"이라 함은 업무집행사원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재산의 실질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말하며, 보전해야 할 손해액에는 손해액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보전일까지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포함된다.

#### 제6장 비용 및 보수

##### 제28조(회사운영비용)

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회사운영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1.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정관, 사원간협약 기타 회사 설립 관련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법률자문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서 출자약정총액의 0.1% 또는 1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의 금액. 다만,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경우 회사운영비용으로 인정한다.
2.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업무집행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다)
3. 회계감사, 세무처리 관련 비용
4. 회사재산의 위탁관리, 회계처리, 평가와 관련하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외부평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5. 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자산의 취득·보유·처분에 관련된 경비, 비용, 세금, 회계사 변호사 수입료 및 비용. 다만, 회사재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투자대상에 대한 본 호 본문의 비용은 회사가 그 70%를 부담한다.
6. 회사의 장산 비용
7. 조세 기타 공과금
8.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경우

- ② 제1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비용은 업무집행사원의 비용으로 한다.
- ③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선지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관리보수)

- ① 회사는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이하 "관리보수"로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임))

1.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날 또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신입사원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원총회 결의일 중 늦은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출자약정금총액에 연 1%(이하 "관리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2.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날 또는 제 14조에 의거하여 신입사원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원총회 결의일 중 늦은날 후 2년이 되는 날의 익일 부터 투자가기간이 종료 되는 날까 지는 (i)출자약정금총액에 연 1%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ii) 투자잔액 평잔(해당 관리보수 산정기간 동안 배일의 투자잔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해당 관리보수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같음)에 연 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중에서 작은 금액(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임)
3. 제1호 및 제2호 이후의 기간에는 투자잔액 평잔에 연 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임)
4. 단, 제 25조 제2항에 따라 핵심운용인력이 다른회사의 펀드매니저를 겸임하는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관리보수는 그 다른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임).
  - 가.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 후 2년이 되는날까지 : 아래 (i)의 금액
  - 나. 등록 후 2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투자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아래 (i) 과 (ii) 중 작은 금액

- (i) [출자약정금총액 - (출자약정금총액×50% - 투자잔액, 부의 금액은 "영"으로 함)]의 평잔에 1%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 (ii) 투자잔액 평잔 \*연 1.2% 로 산출된 금액
- ② 본 조 제1항의 관리보수는 회사의 매 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괄 계산하여 매 분기 말일의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설립일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1회차 관리보수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신입사원의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원총회 결의일 중 늦은날로부터 적용하여 계산한다. 업무집행사원의 자산운용업무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시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 기간은 관리보수 산정기간 일수에서 제외한다.
  -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회사의 재산으로 지급받는 것을 제외한다), 해당 금원 상환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내부 부서 중 회사 운영을 담당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투자업체 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인수금융 또는 자산유동화, 회사채인수, 상장, 유상증자, 증권매매 등을 위한 증권위탁매수수수료, 증권발행자문수수료, 증권인수수수료, 증권모집수수료, 금융자문용역 수수료, M&A 인수자문용역 수수료 및 M&A 매각자문용역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제외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본 조 제1항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2.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이 투자대상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기타 업무 감독 또는 경영 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보수 또는 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본 조 제1항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3.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지급 받는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원

4.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 자료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
5.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공동투자자 또는 공동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일체의 금원(다만, 공동투자자 또는 공동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컨소시엄에 회사의 권한책임사원이 포함된 경우 해당 권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수수료 등의 금원은 제외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 ④ 업무집행사원은 관리보수를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수행 관련 비용의 지급과 업무집행사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본 조에 의한 관리보수 산출 및 지급에 있어, 투자대상기업에게 본 조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한 분기 이후에는 투자대상기업 투자원금에 대한 관리보수의 지급을 유보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원금(이하 “부도 등 발생 투자원금”)이 회사 해산 시점까지 현금으로 전액 회수되는 경우에는 전액 회수된 시점부터 유보된 관리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부도 등 발생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사 해산 시점까지 현금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된 관리보수는 회사로 편입되어 사원에게 배분하기로 한다.
- ⑥ 본 조 제5항 본문에서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회생절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장부가액 합계 기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납처

34

- 분의 책수가 있는 경우
4. 투자대상기업이 세계공과금에 대하여 국제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⑦ 투자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투자누계액(투자원금 기준)이 출자약정금액(신입사원의 출자약정금 포함)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관리보수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선정된 금액(이하 “환급관리보수”라 한다)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투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관리보수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text{환급관리보수} = (\text{본 조 제1항에 의한 관리보수}) * [1 - (\text{투자누계액} / \text{출자약정금 총액} * 0.7)]$$
- ⑧ 본 조 제7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제21조 제1항 제호에 따른 투자의무비용 위반을 비롯하여 본 정관, 사원간 합의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업무집행사원의 의견권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자의무비용 위반을 이유로 관리보수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본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일반결의로 관리보수를 삭감한다)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관리보수를 100% 이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총회의 결의일 다음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날까지 본 항 본문에 의한 위반사유를 치유한 경우 본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30조(성과보수)**
- ①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에게 제33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 ②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보수에서 핵심운용인력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별지 4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35

## 제7장 회사재산의 분배

### 제31조(분배 시기)

회사는 (i)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사원총회 일반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ii)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사원에게 수시로 분배할 수 있다.

### 제32조(분배 대상)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에게 분배하는 재산의 원천은 회사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를 공제한 잔여 재산(이하 “분배대상재산”)으로 한다.

1. 회사운영비용
2.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

### 제33조(회사재산의 분배)

① 사원에 대한 회사재산의 분배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원에 대한 납입출자금 및 기준수익율 상당액의 분배

사원에 대한 분배금액의 누적액이 해당사원의 납입출자금 및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그 내부수익율이 기준수익율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각 사원에 분배한다. 본 조에 따른 각 사원별 분배는 각 사원별 납입출자금비율에 따른다.

2. 기준수익율을 초과한 수익의 분배

제1호에 따른 분배 이후에도 남은 분배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그 분배대상재산의 80%(이하 “초과분배금”)는 모든 사원에게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20%(이하 “성과보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분배하도록 한다.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과보

수는 회사의 청산 시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시(무한책임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명되는 경우는 제외)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분배 시점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 또는 손실 등이 발생하여, 회사 청산 시 수익율이 성과보수 지급 시 기준이 된 수익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수익률 하락 분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회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모두 분배하였을 것

2. 본 항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재산에서 회사가 각 분배 시점 이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운영비용 및 관리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것

③ 어느 사원에 대한 분배가 본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된 것으로 사후에 판명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그 초과된 분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라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원은 회사의 반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이하 “반환기한”)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4조(분배의 방법 및 절차)

① 본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3조에 따른 분배는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득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분배를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현물자산으로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현물자산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모든 사원에게는 그 분배금이 있어서 현금과 유가증권 및 그 밖의 현물자산의 구성 비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33조에 따른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사전 승인(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사원총회의 승인에 따라 분배

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분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분배에 대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사전 승인(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예: 월 고정이자수취 투자의 경우, 월별 일정금액의 배당) 사원총회 결의의 내용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 제8장 사원의 지위 변경

#### 제35조(출자지분의 양도 요건)

- ①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인하여 단수의 출자지분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원의 총수가 49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포괄승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원의 총수의 계산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6조(출자지분의 양도 절차)

- ① 사원(이하 “양도사원”)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양도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포함(이하 이 조에서 “나머지 사원”)이라 함), 이하 “양수예정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이하 “양도대상출자지분”)의 죄수, 양수예정인의 성명(양수예정인이 법인인 경우는 명칭 또는 상호), 양도대상출자지분 1좌당 양도대금 기타 양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양도계획서”)을 업무집행사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나머지 사원(들)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양도대상을 지지받을 우선매수할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가진다. 업무집행사원은 양도사원으로부터 양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각 사원

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각 사원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대금을 양도사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양도대상출자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어느 사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양도대상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은 당해 물량에 대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 나머지 사원에게 그 출자지분에 비례한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에 대하여 제차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사원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대금을 양도사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양도대상출자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위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매수되지 아니한 양도대상출자지분이 있는 때에는 매각사원은 본 조에 의한 나머지 사원에 대한 우선매각 조건보다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사원이 양도 사실을 업무집행사원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본 장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업무집행사원에게 제출한 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따라 별지 1에 기재된 사원별 출자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양수인을 포함한 모든 사원은 그와 같이 변경된 본 장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출자지분 양도의 효과)

- ① 사원이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양도사원과 양수인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양수인은 양도대상출자지분 중 자신이 양수한 출자지분의 비율(이하 “양수비율”)에 따라 양도사원의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포괄승계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양수인은 (양수인이 기존의 사원인 경우에는 그 자신의 출자약정금잔액 한도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와 회사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에 더하여) 양도사원의 출자약정금잔액에 양수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와 회사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

을 부담한다.

#### 제38조(사원의 퇴사)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법인인 사원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 청산 또는 파산한 때
  2. 법인인 사원의 기업구조조정축진법에 따른 관리원칙의 개시
  3. 법인인 사원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4. 개인인 사원의 금치산 전고를 받은 때 또는 파산한 때
  5. 출자지분이 전부 양도된 때
  6. 제명된 때
  7. 퇴사에 관하여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8. 출자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제1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9. 업무집행사원이 제41조에 따라 해임된 때
  10. 사원이 제42조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때
- ②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그 출자의무는 소멸하며,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퇴사일부터 그에 관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의 퇴사에 따라 별지 1에 기재된 사원별 출자 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사원은 변경된 정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39조(사원의 제명)

①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해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3.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본 조에 따라 제명된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은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49조에 따라 평가한 회사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그 공정가액에 제명된 사원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제명된 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사원은 제명된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환급금액은 회사의 청산 시에 지급하되,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회사의 청산 이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40조(퇴사 사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

① 사원(이하 본 조에서 "퇴사 사원")이 제38조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그 공정가액에 퇴사 사원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사 사원에 대한 출자지분의 환급액으로 하되, 동 환급액은 회사 청산 시(이하 "환급액 지급일")에 퇴사 사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청산 전에 퇴사 사원에 대한 출자지분의 환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사운영비용,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퇴사일 이후부터 해산 시까지의 관리보수를 포함한다) 및 성과보수에 퇴사 사원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
2. 회사재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비용
3. 기타 퇴사 사원의 퇴사 및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 및 비용.

② 본 조 제항에 따른 환급액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확정하되, 환급액은 회사가 보유 중인 현금 기타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금 회되지 않은 회사재산의 교부로 출자금의 환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청산 시에 환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청산 시 퇴사 사원에 대한 분배금으로 출자금의 환급에 갈음한다. 다만, 그 분배금이 본 조 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른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금만을 지급하고, 그 분배금이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사 사원에 대해서는 그 환급액만을 지급하며, 초과분은 퇴사 사원

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귀속된다.

#### 제41조(업무집행사원의 해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해임하고자 하는 업무집행사원(이하 “해임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임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다수의 유한책임사원을 합하여 출자지분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업무집행사원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임업무집행사원 해임을 위한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라 해임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는 경우 해임업무집행사원은 그 해임을 결의한 사원총회 결의일(이하 “해임일”이라 한다)에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본 조에 따라 해임된 해임업무집행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은 해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되, 그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산정된 환급금액은 회사의 청산 시에 지급되되,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청산 이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 조 제1항의 사원총회결의에서 업무집행사원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자의무비용 위반을 비롯하여 본 정관, 사원간 합의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결의하는 경우 본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임업무집행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2조(사원의 지위 변동)

① 사원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기타 조직변경(이하 “조직변경 등”)으로 해당 사원의 지위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출자지분이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보며, 그 출자지분 양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사원이 조직변경 등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지위가 제3자(본 조에서 “신규 업무집행사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신규 업무집행사원

은 조직변경 등이 있을 때로부터 30영업일 이내(이하 본 조에서 “조직변경 통의기간”)에 사원총회 전원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규 업무집행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의 조직변경 등이 있는 때로부터 (i)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를 받은 때까지, (ii)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될 때까지, 각 기존 자산의 유지, 사무회계처리 등 통상적인 관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집행사원의 자산운용업무는 중단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신규 업무집행사원이 조직변경 등이 있을 때로부터 30영업일 이내(이하 본 항에서 “조직변경 통의기간”)에 제2항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하 본 조에서 “퇴사업무집행사원”)은 조직변경 통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퇴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집행사원이 없게 되는 경우 본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사 업무집행사원은 새로운 업무집행사원이 임사한 다음 날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사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제9장 해산 및 청산

#### 제43조(해산)

회사는 본 정관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회사 존속기간 만료 시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다.

1. 사원 전원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2. 무한책임사원 전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단,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사원이 퇴사, 제명, 권한상실 및 기타 정관에 정한 이유로 지위가 변동된 후 업무를 집행할 다른 또는 새로운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

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1.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제44조(청산인)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제45조(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사무의 종결
2. 투자자산의 처분 기타 회사재산의 환가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회사재산의 분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은 청산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6조(청산의 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사원에게 송부한다.

②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회사재산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따라 분배한다.

1.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지급
2. 청산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우발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유보금의 설정
3. 회사운영비용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의 지급
4. 제33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잔여 재산의 분배

④ 청산인은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제10장 회계

#### 제47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사가 설립되는 년도의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회사 설립일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보고, 회사가 해산되는 년도의 사업년도는 회사 해산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회사의 해산일까지로 한다.

#### 제48조(회계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본 장관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별도 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기준에 따른다.

#### 제49조(투자자산의 평가)

회사의 해산 시에는 회사재산의 분배 등을 위하여 미처분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그 분배일 직전 30일간 종가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에 의해 선정된 제3자가 평가하는 가격, 또는 취득가, 거래 가능한 시장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단,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

라 인정된 해외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통과의 편안이 필요할 경우 평가일 전일 종가 기준 한국은행이 고시한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제50조(장부의 열람권 등)**

①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 회사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동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사원은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동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사원은 본 조에 따라 지득하게 된 회사 또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내부자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하여 다른 사원, 회사 및 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각 해당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야기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51조(회계보고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매 반기말 및 매 사업년도 종료 이후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총회시에 각 사원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사원은 매 반기말 및 매 사업년도 종료 즉시 회계감사인에게 제1항 기재 서류를 제출하여 회계감사인으로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감사보고서를 제1항 기재 서류와 함께 정기총회시까지 각 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계감사인으로서 하여금 회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 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원들에게나 통지 또는 동의의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일 경우, 그 내용을 그러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이 추천하는 회계법인 목록 중에서 3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각 회계법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품질과 비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비교 검토 결과 및 선정 내역을 사원총회에 부의하여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최종 선임한다.

⑥ 업무집행사원은 동일 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52조(공동투자)**

①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사와 공동으로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제공(이하 "공동투자")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동투자는 직접 또는 당해 투자를 위하여 해당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한 타 회사들 또는 세로이 설립된 다른 법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에게 공동투자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은 서면통지로 각 유한책임사원에게 각 건별로 확정된 투자총액에서 회사가 투자할 금액을 제외한 투자총액 중 각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본 항 제1호에 의한 서면통지로 업무집행사원으로 부터 공동투자 참여를 권유받은 유한책임사원은 각 개별 공동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업무집행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각 개별 공동투자금액의 투자 여부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이하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미참여분"이라 한다), 업무집행사원은 미참여 분 중 다른 유한책임사원 각자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유한책임사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항 제2호의 절차를 준용한다.
4. 유한책임사원이 본 항 제3호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각 개별 공동투자 금액의 투자 여부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인수되지 아니하고 남은 미참여분에 대하여 제3자를 선정하여 공동투자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사원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각 유한책임사원의 공동투자 참여분에 대하여 (i) 회사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50%와 (ii) 유한책임사원이 아닌 제3자가 공동투자에 참여한 경우 해당 제3자가 회사와 공동투자를 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

**제53조(통지)**

- ① 정관 및 본 규정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우편, 직접 교부, 텔레그램, 팩시밀리,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는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일 후, 직접 교부시는 교부일에, 텔레그램·전자우편 및 팩시밀리의 경우는 발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 ③ 각 사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변경 통지가 없는 한,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행하여야 한다.
1. 한국정채금융공사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우편번호: 150-973  
 전 화: 02-6922-6921  
 팩시밀리: 02-6922-6662  
 전자우편: allday@kofc.or.kr  
 참 조: 과장, 전종일

2.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4-15 국민연금 강남회관  
 우편번호: 135-010  
 전 화: 02-3014-1985  
 팩시밀리: 02-3485-9905  
 전자우편: hjkim@nps.or.kr  
 참 조: 과장, 김현중

3.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우편번호: 150-704  
 전 화: 02-767-0399  
 팩시밀리: 02-767-0160  
 전자우편: rcmode@krcu.or.kr  
 참 조: 과장, 정봉근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정로1가 75  
 우편번호: 100-707  
 전 화: 02-2080-8462  
 팩시밀리: 02-3487-6166  
 전자우편: leewan203@yahoo.co.kr

참 조: 차장, 이원진

5. 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283

우편번호: 140-872

전 화: 02-3781-2838

팩시밀리: 02-749-8609

전자우편: omimb@pocha.or.kr

참 조: 대리, 김동환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통지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편번호: 150-742

전 화: 02-769-4142

팩시밀리: 02-769-4149

전자우편: yunvestor@ktmpf.or.kr

참 조: 차장, 윤태원

제54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다만, 본 정관에 정관 변경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55조(비밀유지)

사원은 회사 존속기간 중 및 회사 청산종료 후 2년 경과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회사의 사원으로써 취득한 정보를 제3자(사원의 특수관계인 을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원 기타 장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미 일반 공중이 널리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사원이 회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단, 불법·부당한 방법

으로 취득한 정보는 제외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6조(정관의 작성연월일)

본 정관은 2010년 11 월 26일 작성되었다.

제57조(정관의 일부 실효)

본 정관의 일부 규정이 관련 법령의 개폐 등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에도 그로 인하여 본 정관의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8조(정관의 해석 및 보충)

본 정관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또는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하고 보충한다.

제59조(기타)

- ① 회사 또는 본 정관과 관련된 사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 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 ② 회사와 사원 간 또는 사원과 사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다.
- ③ 본 정관을 위반한 사원은 회사 또는 다른 사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정관을 위반한 사원이 금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회사 또는 다른 사원은 본 정관을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10년 11월 26일

사원 서명란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

성명(상호): 미래에셋헬스자산운용㈜  
사업자등록번호: 116-81-13888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대표자: 유정현  
출자약정금: 10,7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한국경제금융공사  
사업자등록번호: 107-82-13888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대표자: 유재한  
출자약정금: 150,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국민연금공단  
사업자등록번호: 219-82-01593  
주 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대표자: 진광우  
출자약정금: 100,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업자등록번호: 116-82-01348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대표자: 김정기  
출자약정금: 30,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농협중앙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7072  
주 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대표자: 김태영  
출자약정금: 20,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자등록번호: 105-82-02556  
주 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  
대표자: 구기찬  
출자약정금: 20,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업자등록번호: 116-82-01445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대표자: 주성도  
출자약정금: 25,000,000,000원

유한책임사원

성명(상호): 공무원연금공단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935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1  
대표자: 김진만  
출자약정금: 20,000,000,000원

<별지 1>  
사원별 출자 내역

상호 또는 명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액정량	출자 비율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주)	무한책임사원 (GP)	116-81-21537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11,300,000,000 원	3.0%
한국정책 금융공사	유한책임사원 (LP)	107-82-13888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	150,000,000,000 원	39.9%
			서울송파구 신천동 7-16	100,000,000,000 원	26.6%
국민연금공단	유한책임사원 (LP)	116-82-01348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30,000,000,000 원	8.0%
			서울중구충정로 1가 75	20,000,000,000 원	5.3%
한국교직원 공제회	유한책임사원 (LP)	110-82-07072	서울용산구 한강로 2가 101	20,000,000,000 원	5.3%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25,000,000,000 원	6.6%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유한책임사원 (LP)	105-82-02556	서울강남구 역삼 1동 701	20,000,000,000 원	5.3%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25,000,000,000 원	6.6%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유한책임사원 (LP)	116-82-01445	서울강남구 역삼 1동 701	20,000,000,000 원	5.3%
사립한국교직원 연금공단	유한책임사원 (LP)	116-82-01445	서울강남구 역삼 1동 701	20,000,000,000 원	5.3%
공무원연금공단	유한책임사원 (LP)	220-82-00935	서울강남구 역삼 1동 701	20,000,000,000 원	5.3%
출자 합계 금액				376,300,000,000 원	100.0%

<별지 2>  
주목적투자분야

- A.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부 선정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기업 (녹색금융은 제외)]
- B.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서 선정된 27대 중점우성 기술 분야 기업]
- C.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분야]

<별지 3>  
핵심운용인력의 인적 사항

구분	성명	소속(직위)	학력	주요경력
대표 펀드매니저 (1인)	유정원	미웨에셋캡스자산운용 PEF 투자본부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 M&A 펀드 운용경력: 8.8년 -미웨에셋 PEF 1-5호 대표 펀드매니저 -한국산업은행투자업무개발실 투자원래(S-C) 의 3 개사 사의이사 겸직 · 한국공적자원개발/행정문제회 대책투자부문의부전문임사위원 · M&A 펀드 운용경력: 8.3년 - KDB-Lonestar CRC - Hudson-advisors Korea · 투자업체(S-B) 의 2 개사 사의이사 겸직
	손영민	미웨에셋캡스자산운용 PEF 투자본부(이사)	서울대 독어교육 학과	· M&A 펀드 운용경력: 5.7년 · 대우증권 M&A 컨설팅팀부 · 투자업체(S-F)사의이사 겸직
	유혁상	미웨에셋캡스자산운용 PEF 투자 1 본부(본부장)	서울대 노이노문학부, 서강대 MBA	
	박준	미웨에셋캡스자산운용 PEF 투자 3 본부(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 UC Berkeley MBA	· M&A 펀드 운용경력: 3년 · 두산그룹 전략본부 · 삼성증권 IB 사업부
핵심 운용인력 (4인)	장원재	미웨에셋캡스자산운용 PEF 투자 2 본부(본부장)	고려대 경영학과 London Business School 재무학석사	· M&A 펀드 운용경력: 2.7년 · PWC FAS 팀

<별지 4>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구분	기준
인센티브 채원	업무집행사원 성과보수의 최소 30%이상
인센티브 지급대상	PEF투자본부 내 6호PEF관여 인력 전원 - 핵심운용인력 - 일반운용인력 - 관리인력
인센티브 분배방법	1. PEF부문 대표이사 재량으로 본부별 분배 2. 각 본부별 담당본부장이 팀원별 분배
인센티브 지급시기	1. 개인별 인센티브금액을 업무집행사원의 성과 보수수령 결산연도 및 이후 2개연도에 걸쳐 3 회에 나누어 지급 2. 퇴사 시, 잔여 인센티브 소멸